

韓日技術士 合同 심포지움



韓國의 技術導入政策과 現况

科學技術處審議官

黃 海 龍 *

<目 次>

1. 序 言

2. 技術導入에 關한 政策

3. 技術導入의 制度

4. 結 語

1. 序 言

最近 世界的으로 政治, 軍事 經濟與件의 激動함에 따라 바야흐로 各國은 에너—지, 食糧등 資源確保에 血眼이되고 있으며,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保護貿易의 傾向 南北經濟關係의 緊張 등 國際貿易 秩序에 論은 變化를 가져왔으며, 한편 環境安全問題는 더욱 深刻하고 複雜하게 되어 가고 있다. 유난히 狹少한 國土, 天然資源의 缺乏, 人口密度의 過多等 經濟成長에 不利한 諸與件下에서 高度產業國家와 福祉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우리는 對內外環境의 變化에 適應力を 培養하고, 難關을 꾸준히 克服하여 우리의 生存基盤을 堅固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의 役割이 이제까지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近代社會를 建設하는데 原動力이 되어 온 것은 事實이나 現在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諸問題를 解決하고, 새로운 未來를 開拓함에 있어서 그 役割의 重要性이 더욱 切實히 要望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의 水準을 높이기 위한 自主的인 研究開發과 先進技術의 導入을 調和있개相互補完의 으로 積極促進시키는 施策을 써 나가야 할 것이다.

2. 技術導入에 關한 政策

우리나라의 技術導入에 關한 政策目標는 첫

* 金屬技術士(金屬材料 및 加工)

째, 國內技術水準向上을 위한 先進技術導入의 積極的인 嘉獎와 促進을 하고, 둘째, 技術導入契約條件을 有利하게 誘導하며, 셋째, 長期의 으로는 技術의 對外依存度를 줄이고 自體技術開發能力을 強化하는데 두면서 다음과 같은 技術導入에 關한 政策을 推進해 나가고 있다.

가. 段階的인 自由化措置

政府는 1978. 11. 11 技術導入의 自由化 第一段階措置를 取한데 이어 79. 4. 24 第二段階措置를 取한바 있다. 이려한 一連의 措置는 政府의 技術導入認可節次의 簡素化를 意味하며, 商品輸入自由化政策과의 調和를 이루게 하고, 不必要하고 複雜한 統制의 非能率性을 除去시켰으며 또한 民間企業의 自律的인 判斷에 맡기기 위한 措置로 풀이된다. 다만 技術導入의 自由化措置는 特히 中小企業의 導入技術의 選別能力이 弱하고 經驗不足등에서 오는 不利한 契約締結과, 政府의 統制脫皮로 부터 發生할지모를 契約商談力의 弱화등이 虞慮되어 아직 問類點으로 尚存하고 있기는하다.

나. 技術導入의 量的擴大

지금까지 技術導入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經濟規模나 高度產業化政策에 따른 莫大한 技術需要를勘案할때 適正規模의 所要技術을 定量的으로 算出하기는 困難하지만, 現在보다는 量的으로 擴大導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의 경우 輸出 100億弗을 達成한 1967年에 支拂한 技術導入代價는 輸出對比 2.2% 였던바 이에 比하면 우리의 實績은 이의 約 10 %에 不過하며, 特히 우리의 技術水準이 落後된 事情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技術導入이 切 實히 要望된다.

다. 適正技術의 分解導入勸誘

先進技術導入을 消化, 吸收, 改良시키고 自體 技術開發能力을 培養하기 위한 첫째 要件은 무엇보다도 適正技術의 選定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優秀한 人力과 頭腦를 最大로 活用할 수 있고 賦存資源을 効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으며, 또한 國家經濟의 規模와 產業構造에 가장 適合하고 技術의 價值가 上昇局面에 있는 適正技術 을 選別導入하는 것이 先決課題라 하겠다.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技術導入이 企業體의 技術評 價 및 選別能力의 不足으로 低級 또는 落後된 技術을 導入하거나 技術의 壽命이 거이 다된 斜陽化된 技術을 導入하여 온 것은 否認 할 수 없는 事實이다. 또한 對象技術에 對한 關聯知識, 情報의 缺如 또는 交涉能力의 貧弱등으로 因하여 不必要한 技術이나 既保有 技術까지도 Package로 一括導入하는 경우까지도 許多하여 結局은 必要以上の 導入代價를 支拂해야 하는 어리석음 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上의 技術導入上의 問題點은 企業 스스로가 適正技術을 選定할 수 있는 能力, 技術 Package의 構成要素를 正確히 分解할 수 있는 自體能力과 核心技術을 빨리 消化改良할 수 있는 能力を 키우고, 代替可能한 技術에 對한 充分한 情報源과 強力한 協商能力을 培養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라. 導入先의 多邊化 誘導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技術導入實績을 보면 全體의 六割以上을 日本으로부터 偏重導入하였다. 技術導入이 企業規模上의 差異나 또는 技術水準의 심한 格差등으로 因하여 不得已한 경우도 있겠으나 海外技術市場에 關한 情報源의 制約이나 單純한 言語上의 不便때문에 日本으로부터 導入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中에는 原本 技術

아닌 複寫技術까지도 間接導入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의 技術水準이 어느程度 높아짐에 따라 最近에 와서 國際競爭力의 不利등을 理由로 日本의 一部企業에서는 對韓技術輸出을 忌避하는 現象마저 일어나고 있다. 여하간 우리는 二次의 技術은 可及的 導入을 止揚하고 原本 技術提供者로부터 核心技術만을 選定하여 直接 導入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마. 不利한 契約條件의 是正

技術導入契約中에는 흔히 導入者側에서 不利한 다음에 列舉하는 制限條項이 包含되는 경우가 많다.

- ① 輸出地域, 輸出價格 또는 輸出量의 制限
- ② 導入先으로부터의 原資材 또는 副資材의 供給強要
- ③ 必要以上의 長期契約期間 또는 高價의 技術代價 要求
- ④ 生產製品에 對한 品質保障 또는 工程上의 性能保障등의 忌避
- ⑤ 內需用製品에 對한 商標使用의 強要
- ⑥ 契約終了後의 導入技術의 使用禁止 또는 提供된 技術資料의 返還要求

이러한 不利한 制限條項등을 是正 또는 抑制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비록 自由化措置에 따른 自動認可對象技術이라 할지라도 그 技術導入은 認可하지 않고 있다.

3. 技術導入의 制度

우리 나라의 技術導入은 外資導入法의 適用을 받는 技術導入契約과 技術用役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技術用役契約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支拂期間 또는 契約期間이 一年以上인 경우에는 外資導入法을, 一年未滿인 경우에는 技術用役育成法의 適用을 받도록 그 適用範圍를 規定하고 있다.

가. 外資導入法(1966年 制度)

1) 認可節次

認可節次는 自動認可制와 個別審查制로 구

分된다.

⑦ 自動認可是 1979. 4. 24 技術導入의 第二段階自由化措置에 따라 原子力 및 防衛產業을 除外한 全產業의 技術種目으로서 契約期間이 10年以內, 代價가 첫번째 경우 先拂金 50萬弗과 經常技術料(Running Royalty) 10%以下이거나 두번째 경우 定額拂(Lumpsum)로서 100萬弗 以下일 경우에는 自動認可에 該當시켜 主務部長官에게 申請하면 主務部長官의 認可로서 書類節次를 大幅 簡素化시켜 놓았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록 自動認可에 該當될지라도 技術導入을 認可하지 않고 있다. (施行令第5條)

- ① 單純한 意匠, 商標의 使用 또는 獨占販賣權의 利用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 ② 原資材, 部品 또는 附屬品의 販賣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 ③ 顯著한 不公正 또는 輸出制限條件등 制限의 內容을 包含하는 경우
- ④ 國內開發이 必要한 技術로서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告示한 技術을 導入하고자 하는 경우
- ⑤ 導入하고자 하는 技術의 內容이 低級 또는 落後된 技術인 경우
- ⑥ 個別審查는 上記 自動認可以外인 경우에 는 認可基準과 審查事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自由化措置以前대로 個別審查節次를 거쳐 認可하고 있다.

認可基準(法第4條)

- ① 國際收支의 改善에 顯著히 寄與하는 事業
- ② 重要產業 또는 公益事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事業
- ③ 國民經濟의 發展 및 社會福祉에 寄與하는 事業

審查事項(施行令第3條)

- ① 導入의 必要性
- ② 技術의 內容 및 提供方法
- ③ 技術導入의 代價 및 契約期間
- ④ 國內의 自主的 技術開發의 阻害與否
- ⑤ 다른 同種의 技術과의 關聯性

⑥ 經濟的, 技術的 波及效果

書類節次는 經濟企劃院長官에게 認可申請을 하면 科學技術處 및 主務部에 意見을 聽會하고 外資事業投資審查委員會 및 外資導入審議會에 上程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認可하도록 되어 있다.

2) 技術提供者에의 特典

認可된 技術導入의 提供者에 對하여는 技術代價의 送金이 保障(法第20條)되며, 代價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5年間은 100% 免稅, 그 後 3年間은 50% 減稅해 주는 租稅上의 特典을 주고 있다.

나. 技術用役育成法(1973年 制定)

1) 承認節次

同法은 元來 國內技術用役의 健全한 育成과 國內技術水準의 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目的으로 制定되었으며, 國내에서 遂行되는 技術用役은 可及的 國內用役業者에게 優先시킨다는 原則아래 다음과 같은 事項을 審查하여 承認하고 있다.

審查事項(施行令 第14條)

- ① 國內用役業者에 依한 遂行能力
- ② 外國用役業者 活用의 必要性
- ③ 外國用役業者 選定의妥當性
- ④ 用役의 內容 및 提供方法
- ⑤ 用役期間 및 代價

書類節次는 科學技術處에 申請하면 上記事項을 審查하고 代價가 30萬弗以上인 경우에는 用役審議委員會에 上程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用役代價에 對한 送金은 外國換管理法에 依하여 保障되나, 外資導入法의 適用을 받는 技術導入파는 달리 아무런 租稅上의 惠澤이 없는 것을 알아두면 參考가 되겠다.

4. 結語

世界的으로 技術交易이 점차 增加趨勢에 있기는 하나 導入國側의 立場으로서는一般的으로 점점 不利한 方向으로 흐르는 傾向이 엿보인다.

① 先進國에서는 技術을 政治外交의 道具化로

삼는 傾向이 있고

- ② 先進諸國이 資本的支配로부터 技術의 支配에 依한 市場을 確保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으며
- ③ 技術의 Seller's market化에 따라 高價의 技術代價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條件을 要求하며
- ④ 核心的 Know-how나 基本設計등의 提供을 忌避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루하게

됨에 따라 競爭的 意識을 느끼는 先進諸國으로부터의 警戒가 높아져가고 있음을勘案한다면 우리의 技術導入에 있어서 上記한 여러가지 不利한 制約가 加重될 것은 쉽게豫想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產業技術開發을 위한 技術導入의 利點을 充分히 認識하고 適正技術을 有利하게 選定導入하고 이를 早速히 消化改良해 나가며, 한편 自主的인 研究開發活動을 調和있게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者倫理要綱

現代的 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된 倫理要綱을 아래와 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써 祖國의近代化에 이바지 할 것을 깊이 銘心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權威를 維持하도록 努力하며,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團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利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도 從事하여서는 안되어, 의 아스러운 企業體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주는 것을 拒絕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人이나 雇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을 지켜야 한다. 또는 他人의 資料報情를 引用할 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限한 發言과 非權威的 또 眇惑的 宣傳을 삼가야하며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人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應分의 物資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